

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주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8.

발의자 : 주호영 · 이상휘 · 김용태  
고동진 · 김성원 · 조은희  
최보윤 · 신성범 · 김기현  
장선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,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(生父)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.

이에,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가.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(안 제846조 및 제847조).



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46조(자녀의 친생부인) ① 제844조에 따라 부로 추정되는 사람(이하 “법률상 부”라 한다), 모 또는 생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, 자녀가 법률상 부와 동거한 기간 및 친소관계, 자녀의 양육상황, 생부의 양육능력 및 양육의사 등을 고려할 때 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

제8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률상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,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,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

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.

제848조제1항 전단 중 “남편이나 아내가”를 “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”로 한다.

제8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49조(자녀 사망후의 친생부인)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법률상 부, 모 또는 생부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은 제8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
제850조 중 “부(夫) 또는 처(妻)가”를 “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”로 한다.

제851조의 제목 중 “자”를 “자녀”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률상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전 또는 제847조제3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법률상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0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85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자의 출생 후에”를 “자녀의 출생 후에”로, “승인한 자는”을 “승인한 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적용례) 제8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사유에 의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) 생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친생부인의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8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第846條(子의 親生否認) 부부의 일방은 第844條의 境遇에 그子가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</u></p>	<p><u>제846조(자녀의 친생부인) ① 제844조에 따라 부로 추정되는 사람(이하 “법률상 부”라 한다), 모 또는 생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, 자녀가 법률상 부와 동거한 기간 및 친소관계, 자녀의 양육상황, 생부의 양육능력 및 양육의사 등을 고려할 때 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847조(친생부인의 소)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847조(친생부인의 소) ① 법률상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,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다.</u></p>

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848조(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)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第849條(子死亡後의 親生否認) 子가 死亡한 後에도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母를 相對로, 母가 없으면 檢事を 相對로 하여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,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.

제848조(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)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49조(자녀 사망후의 친생부인)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법률상 부, 모 또는 생부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은 제847조제1항 및 제2항에

	<p><u>따른다.</u></p> <p>第850條(遺言에 依한 親生否認)  <u>부(夫) 또는 처(妻)가</u> 遺言으로      否認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     遺言執行者는 친생부인의 소를      提起하여야 한다.</p> <p>제851조(부의 <u>자녀</u> 출생 전 사망      등과 친생부인) <u>법률상 부 또</u>  <u>는 모가 자녀의 출생 전 또는</u>  <u>제847조제3항의 기간 내에 사</u>  <u>망한 때에는 법률상 부 또는</u>  <u>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</u>  <u>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</u>  <u>10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</u>  <u>기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 <u>자녀</u>  <u>의 출생 후에</u> <u>승인한</u>  <u>사람은</u></p>